

의안번호	제 978 호
의 결 연 월 일	2022년 1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임동현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2년 1월 10일

#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동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78
----------	-----

발의연월일 : 2022년 1월 10일

발의자 : 임동현, 정상교, 최경천,  
김국기, 김영주, 박성원,  
이수완 의원

## 1. 제안 이유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무상교육을 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학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어 외국 국적 유아의 교육적 소외와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 유아의 인권보호와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외국 국적 유아의 취학 전 3년간의 유치원 유아학비를 국내 유아들과 차별 없이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 예비학교” 및 “다문화 교육 중점학교”를 교육부정책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 내용을 신설(안 제3조의2)
- 나. “다문화 예비학교”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으로 용어 변경(안 제 12조)

다.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를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용어 변경  
(안 제13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학교자치과

##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호문화존중을 통한 다문화이해교육 사업
2.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재원하는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
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의 제목 “(다문화예비학교 지정·운영)”을 “(다문화학생 특별학급 지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다문화가정”을 “다문화가족”으로, “다문화예비학교를”을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다문화예비학교”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다문화 예비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을 “다문화학생 특별학급 운영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지정·운영)”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점학교”를 “정책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유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유치원

2.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초·중등

제13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중점학교”를 “정책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를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3조의2(사업) 교육감은 <u>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상호문화존중을 통한 다문화이해 교육 사업</u></li> <li>2. <u>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u></li> <li>3. 「<u>유아교육법</u>」에 따른 유치원에 <u>채원하는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u></li> <li>4. 그 밖에 <u>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li> </ol>
<p>제12조(<u>다문화예비학교 지정 · 운영</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교육감은 <u>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다문화예비 학교를 지정 · 운영할 수 있다.</u></li> <li>② 교육감은 <u>다문화예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u></li> <li>③ 제1항에 따른 <u>다문화 예비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u></li> </ol>	<p>제12조(<u>다문화학생 특별학급 지정 · 운영</u>) ① -- <u>다문화가족</u> ----- ----- <u>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을</u> -----.</p> <p>② ----- <u>다문화학생 특별학급</u> -----.</p> <p>③ ----- <u>다문화학생 특별학급 운영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족</u> -----.</p>
<p>제13조(<u>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지정 · 운영</u>) ① 교육감은 <u>다문화교육</u></p>	<p>제13조(<u>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 · 운영</u>) ① -----</p>

진흥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중점 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정책학교  
-----.

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교육 정책 학교 유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유치원
2.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초·중등

③ ----- 정책학교 ---  
-----  
-----.

④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  
-----.

# 관 계 법 령

## □ 유아교육법

[시행 2021. 9. 9.] [법률 제18193호, 2021. 6.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 다문화가족지원법 ( 약칭: 다문화가족법 )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1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5. 12. 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 2. 1.>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4., 2016. 3.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 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 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구성원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4., 2017. 12. 1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 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 2017. 12. 1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의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사·질문 등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 12. 1., 2017. 12. 12.>

⑥ 결혼이민자 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2017. 12. 12.>

⑦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4., 2015. 12. 1., 2017. 12. 12.>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약칭: 외국인처우법 )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74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1.>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제정수반요인

- 조례 개정안에 따라 외국 국적 유아의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에 재원하는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 결과

연간 소요비용 추계		연도별 소요비용 추계(단위: 천원)					
산출기초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1 외국국적 유치원 유아에 대한 교육비	<b>2,161,800</b>	357,000	394,680	432,360	470,040	507,720	<b>2,161,800</b>
가. 공립유	<b>1,436,400</b>	226,800	257,040	287,280	317,520	347,760	<b>1,436,400</b>
나. 사립유	<b>725,400</b>	130,200	137,640	145,080	152,520	159,960	<b>725,400</b>

### 나. 산출 결과

(단위: 원, 명)

구분	단가	원아수	지원개월수	금액	비고
2022년					
공립유	150,000	126	12	226,800,000	
사립유	350,000	31	12	130,200,000	
<b>합계</b>		<b>157</b>		<b>357,000,000</b>	
2023년					
공립유	170,000	126	12	257,040,000	
사립유	370,000	31	12	137,640,000	
<b>합계</b>		<b>157</b>		<b>394,680,000</b>	
2024년					
공립유	190,000	126	12	287,280,000	
사립유	390,000	31	12	145,080,000	
<b>합계</b>		<b>157</b>	<b>12</b>	<b>432,360,000</b>	
2025년					
공립유	210,000	126	12	317,520,000	
사립유	410,000	31	12	152,520,000	
<b>합계</b>		<b>157</b>		<b>470,040,000</b>	
2026년					
공립유	230,000	126	12	347,760,000	
사립유	430,000	31	12	159,960,000	
<b>합계</b>		<b>157</b>		<b>507,720,000</b>	

- 2020~2022년 유아학비 지원상승률 반영 (2020년 공립유 110천원, 사립유 310천원/ 2021년 공립유 130천원, 사립유 330천원/ 2022년 공립유 150천원, 사립유 350천원/ 매년 20천원 상승 금액 반영)
- 원아수는 2021년 공·사립유치원 외국 국적 유아수(2021.4.1.기준)로 동일 작성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357,000	394,680	432,360	470,040	507,720	2,161,800	
세 출							
외국국적 유치원 유아에 대한 교육비	357,000	394,680	432,360	470,040	507,720	2,161,8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357,000	394,680	432,360	470,040	507,720	2,161,800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357,000	394,680	432,360	470,040	507,720	2,161,80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